「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」

검토보고서

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1년 9월 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I. 제안이유

2021년도 제2회 추경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「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」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평창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 으려 하는 것임.

Ⅱ. 주요내용

가.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

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한 농축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타수입 및 예치금으로 편성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을 변경하고자 함

나. 기금운용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음.

[단위:처원]

기 금 명	계획액	기정계획액	비교증감		
합 계(7건)	7,117,526	6,907,526	210,000		
통합재정안정화기금	1,051,451	1,051,451	0		
체육진흥기금	1,506,155	1,506,155	0		
식품진흥기금	149,905	149,905	0		
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	60,240	60,240	0		
재난관리기금	2,440,375	2,440,375	0		
옥외광고발전기금	120,339	120,339	0		
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	1,789,061	1,579,061	210,000		

Ⅲ. 기금변경 개요

□ 기금조성규모

○ 「지방자치법」및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과 개별법에 따라 설치 및 관리·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으로 2021년도말 기금조성계획액은 7,117백만원 임.

[단위:천원]

기 금 명	계획액	기정계획액	비교증감		
합 계(7건)	7,117,526	6,907,526	210,000		
통합재정안정화기금	1,051,451	1,051,451	0		
체육진흥기금	1,506,155	1,506,155	0		
식품진흥기금	149,905	149,905	0		
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	60,240	60,240	0		
재난관리기금	2,440,375	2,440,375	0		
옥외광고발전기금	120,339	120,339	0		
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	1,789,061	1,579,061	210,000		

Ⅳ. 검토결과

가. 기금운용 변경계획(총괄)

- 수입·지출계획은 7,117**백만원**으로 기정액 대비 210**백만원**이 증액되었음
 - 세입은 기정액 대비 기타수입 21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
 - ■세출은 **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**에서 예치금 210백만원을 편성하였음

〈기금운용 변경내역〉

[단위:천원]

7 H	-개출(A)		 기 정 _.		スカ	
구 분 	계획액	구성비	계획액	구성비	증감	증감률
총계	7,117,526	100.00%	6,907,526	100.00%	210,000	3.04%
통합재정안정화기금	1,051,451	14.77%	1,051,451	15.22%	0	0.00%
체육진흥기금	1,506,155	21.16%	1,506,155	21.80%	0	0.00%
식품진흥기금	149,905	2.11%	149,905	2.17%	0	0.00%
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	60,240	0.85%	60,240	0.88%	0	0.00%
재난관리기금	[] [] [] [] [] [] [] [] [] []		2,440,375	35.33%	0	0.00%
옥외광고발전기금	120,339	1.69% 120,339		1.74%	0	0.00%
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	1,789,061	25.14%	1,579,061	22.86%	210,000	13.30%

나. 기금별 변경내역

- □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(유통산업과)
 - O 수입·지출계획
 - ▶수입은 기정액 대비 계통출하조직(농협) 출연금으로 210백만원 증액되었으며
 - ▶ 지출은 예치금으로 **210백만원**을 편성하였음

<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자금운용계획>

[단위:천원]

		수	입	계	흭					지	출	계	흭	
항 -	목	수입	일액	기정	성액	증	감	항	목	지	출액	기정	성액	증 감
합 >	계	1,78	9,061	1,57	9,061	21	0,000	합	계	1,7	'89,061	1,57	9,061	210,000
전입금	<u>L</u>	50	0,000	50	0,000		0	비용 사 ⁽	-자성 업 비	C	000,000	90	0,000	0
예 치 :	금수	1,07	3,622	1,07	3,622		0	예:	치금	8	889,061	67	9,061	210,000
이자수	입		5,439		5,439									
기타수	입	21	.0,000		0	21	0,000							

다. 검토의견

- 「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2조 제4항에 따르면 "계통출하"란 군 소재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의 산지유통 계통출하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하며,
- 같은조례 제6조 2항에 기금의 재원으로 "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"을 규정하고 있습니다
- 현재까지 군 출연금만으로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"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"을 추가로 적립하고 기금을 확대조성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됩니다.
- 2021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【관계법령】

□ 지방자치법 제142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 ·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 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 - 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 - 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 - 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 - 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-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